KIDO INDUSTRIAL CO., LTD. · BUSINESS PARTNER AGREEMENT

윤리경영 및 상생협력 협약서

(거래처 윤리경영 준수사항)

주식회사 기도산업(이하 “기도산업”이라 한다)은 정직·공정·상호존중의 기본정신에 따라 윤리경영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기도산업과 거래하는 국내외 모든 거래처(이하 “거래처”라 한다)와 함께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신뢰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동반성장을 실현하기 위하여 거래처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과 기도산업의 약속을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제 1 장 총칙

제 1 조(목적)

이 협약은 기도산업과 거래처 간의 모든 거래에서 준수하여야 할 윤리경영, 공정거래, 인권·안전·환경 및 상생협력에 관한 기본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전한 거래문화를 정착시키고 상호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정의)

이 협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래처”란 기도산업과 거래관계에 있거나 거래를 하려는 국내외 법인·단체 및 개인으로서, 원부자재·상품·설비·용역 등을 공급하는 매입거래처와 기도산업으로부터 제품을 구매하거나 생산을 위탁하는 매출거래처를 모두 포함한다.
2. “임직원”이란 기도산업 또는 거래처의 임원, 직원 및 그 대리인을 말한다.
3. “금품등”이란 금전, 유가증권, 상품권, 선물, 향응·접대, 교통·숙박 등 편의,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4. “하위협력사”란 거래처가 기도산업과의 거래를 이행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하도급업체 , 외주가공업체, 원부자재 공급업체 등을 말한다.

제 3 조(적용범위)

① 이 협약은 기도산업과 거래처 간의 모든 계약, 발주 및 거래에 적용한다.

② 기도산업의 국내외 종속회사(해외법인을 포함한다)와 거래하는 거래처에도 이 협약을 적용한다.

③ 거래처는 자신의 직원은 물론, 기도산업 관련 일을 함께하는 하위협력사(하청·외주업체 등)도 이 협약을 지키도록 노력한다.

제 4 조(기본원칙)

① 기도산업과 거래처는 대한민국 및 사업장 소재국의 관련 법령과 건전한 상관례를 준수한다.

② 이 협약과 개별 계약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개별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윤리·인권·안전에 관하여는 더 엄격한 기준을 따른다.

③ 기도산업의 고객(브랜드·바이어)이 요구하는 기준을 기도산업이 거래처에 전달한 경우, 거래처는 그 기준도 함께 지킨다.

제 2 장 윤리경영 및 공정거래

제 5 조(금품등 제공 금지)

① 거래처는 거래와 관련하여 기도산업의 임직원 및 그 가족에게 직접 또는 제 3 자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1. 금액이나 대가성 여부와 관계없이 금전, 상품권, 유가증권, 선물 등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2. 사회통념상 통상적인 수준을 넘는 식사, 주류, 골프 등 향응·접대를 제공하는 행위
3. 교통, 숙박, 관광, 행사 협찬·찬조 등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4. 금전 대차, 보증, 자산의 부당한 염가 매매 등 사적인 거래를 하는 행위
5. 그 밖에 공정한 업무 수행을 해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 1 항의 금품등으로 보지 아니한다.

1. 거래처가 주관하는 공식 행사에서 참석자 모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사회통념상 통상적인 수준의 기념품
2. 원활한 업무 협의를 위하여 제공되는 사회통념상 통상적인 수준의 간소한 식사

③ 거래처는 기도산업의 임직원으로부터 금품등의 제공이나 그 밖의 부당한 요구를 받은 경우 이에 응하지 아니하며 , 기도산업 홈페이지의 감사위원회 등에 신고할 수 있다.

제 6 조(부패방지)

① 거래처는 국내외 반부패 관련 법령을 준수한다.

② 거래처는 기도산업과의 거래를 진행하면서 세관 ·관공서 등의 공무원에게 편의를 바라고 돈이나 선물을 주거나 주겠다고 약속하지 아니한다.

제 7 조(이해상충 방지)

① 거래처는 기도산업의 임직원 또는 그 가족이 거래처의 주주·임직원이거나 거래처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이를 기도산업에 미리 알린다.

② 거래처는 기도산업 임직원의 지위나 영향력을 이용한 부당한 청탁을 하지 아니한다.

제 8 조(투명한 거래)

① 거래처는 기도산업과의 거래를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게 기록하고, 관련 증빙을 관련 법령에 따라 보관한다.

② 거래처는 허위 또는 과다한 송장·세금계산서의 발행, 이중계약, 리베이트 등 거래를 왜곡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③ 거래대금은 계약 당사자 명의의 계좌로만 주고받으며, 거래처가 대금 수령 계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대표자 명의의 서면으로 알린다.

제 9 조(공정한 경쟁)

① 거래처는 입찰이나 견적 과정에서 다른 사업자와 담합하지 아니하며, 허위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② 거래처는 경쟁사의 영업비밀을 부정하게 취득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한다.

제 3 장 인권·노동 및 안전보건

제 10 조(인권 존중 및 근로조건)

거래처는 근로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강제노동이나 인신매매를 이용하지 아니한다.
2. 관련 법령에서 정한 최저 고용연령에 미달하는 아동을 고용하지 아니한다.
3. 근로시간, 휴일, 임금 및 사회보험 등 근로조건에 관한 법령을 준수한다.
4. 성별, 국적, 종교, 장애 등을 이유로 근로자를 부당하게 차별하지 아니한다.
5. 폭언, 폭행, 성희롱 등 근로자의 인격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6. 관련 법령에 따른 근로자의 결사의 자유를 존중한다.

제 11 조(안전보건)

① 거래처는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 사업장의 위험요인을 파악하여 개선하는 등 안전하고 위생적인 근무환경을 제공한다.

② 거래처는 화재 등 비상상황에 대비한 설비와 대응체계를 갖춘다.

③ 거래처는 기도산업과의 거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기도산업에 알린다.

제 4 장 환경 및 품질

제 12 조(환경보호)

① 거래처는 환경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필요한 인허가를 취득하여 유지한다.

② 거래처는 오염물질과 폐기물을 적법하게 처리하며, 에너지·자원 절감 등을 통하여 환경영향을 줄이도록 노력한다.

제 13 조(품질 및 제품안전)

① 거래처는 계약에서 정한 품질·안전 기준과 유해물질 관련 규제를 충족하는 제품과 원부자재를 공급한다.

② 거래처는 시험성적서 등 품질 관련 자료나 원산지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표시하지 아니한다.

제 5 장 정보보호 및 지식재산

제 14 조(비밀유지)

① 거래처는 거래 과정에서 알게 된 기도산업 및 그 고객의 디자인 , 샘플, 사양, 가격, 생산계획 등 영업비밀을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 3 자에게 누설하거나 거래 목적 외로 사용하지 아니한다.

② 거래처는 거래 과정에서 취득한 개인정보를 관련 법령에 따라 보호한다.

③ 이 조의 의무는 거래관계가 종료된 후에도 유지된다.

제 15 조(지식재산권 보호)

① 거래처는 기도산업 및 제 3 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② 거래처는 기도산업 고객의 상표나 디자인이 사용된 제품 , 원부자재 및 잉여·불량품을 기도산업의 사전 승인 없이 판매하거나 외부로 반출하지 아니한다.

제 6 장 공급망 관리

제 16 조(재위탁 제한)

① 거래처는 기도산업의 사전 승인 없이 기도산업으로부터 위탁받은 생산이나 작업을 제 3 자에게 재위탁하지 아니한다.

② 거래처는 하위협력사가 이 협약의 주요 내용을 준수하도록 관리한다.

제 17 조(이행 확인)

① 기도산업은 이 협약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거래처에 관련 자료를 요청하거나 사전 협의 후 사업장을 방문할 수 있으며, 거래처는 이에 성실히 협조한다.

② 확인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거래처는 기도산업과 협의한 기한 내에 이를 개선한다.

제 7 장 상생협력

제 18 조(기도산업의 약속)

기도산업은 거래처를 대등한 동반자로 존중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거래처를 객관적이고 투명한 기준에 따라 선정·평가하며, 특정 거래처에 부당한 특혜를 주거나 차별하지 아니한다.
2. 정당한 사유 없이 거래 단가나 발주 물량을 일방적으로 변경하지 아니한다.
3. 계약에서 정한 대금 지급기일을 준수한다.
4. 부당한 반품, 감액, 구매 강제 및 비용 전가를 하지 아니한다.
5. 거래처의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요구하거나 이용하지 아니한다.

6. 임직원이 거래처에 금품등이나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아니하도록 관리한다.

제 19 조(거래처의 상생협력)

① 거래처는 계약에서 정한 품질, 납기 및 수량을 성실히 이행하고, 이행에 차질이 예상되는 경우 지체 없이 기도산업에 알린다.

② 거래처는 자신의 하위협력사와도 공정하게 거래한다.

③ 기도산업과 거래처는 품질 향상, 기술 협력, 정보 교류 등을 통하여 공동의 경쟁력을 높이도록 서로 협력한다.

제 8 장 위반 시 조치

제 20 조(위반 시 조치)

① 기도산업은 거래처가 이 협약을 위반한 경우 위반의 정도에 따라 시정 요구, 신규 발주 제한, 거래 정지 또는 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거래처가 기도산업 임직원에게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강제노동·아동노동을 이용하는 등 중대한 위반을 한 경우 기도산업은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기도산업은 제 1 항 및 제 2 항의 조치를 하기 전에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래처에 소명할 기회를 준다.

제 21 조(손해배상)

거래처는 이 협약을 위반하여 기도산업에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한다.

제 9 장 보칙

제 22 조(시행 및 개정)

① 이 협약은 기도산업 홈페이지 등에 게시한 날부터 시행하며, 이미 진행 중인 거래에도 적용한다.

② 기도산업은 관련 법령의 변경 등을 반영하여 이 협약을 개정할 수 있으며, 개정한 경우 이를 게시한다.

제 23 조(그 밖의 사항)

이 협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 개별 계약 및 상관례에 따른다.

기도산업은 거래처와 함께 신뢰와 공정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동반성장을 실현하겠습니다.

2026 년 11 월 일

주식회사 기도산업

대표이사 박 장 희